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21. 8. 27.> (앞 쪽)

|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| | | | | 처리기간 30 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신 청 인 |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 | | | | |
| | 생 년 월 일 (법 인 등 록 번 호) | | 전화번호 | | |
| | 주 소 | | | | |
| 사 업 시 행 자 지 정 신 청 내 용 | | | | | |
| 사업구역 | 사업의 명칭 | | 시행면적 | | ㎡ |
| | 위 치 | | | | |
| 사업계획 | 사 업 목 적 | | | | |
| | 사 업 내 용 | | | | |
| | 시 행 기 간 | . . .~ . . . | 시행방법 | | |
| | 자금계획(천원) | (총액) 천원 | (내국자본) 천원 | (외국자본) 천원 | |

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
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귀하

| 수수료 |
|---|
| 없음 |

※ 구비서류

1. 사업계획서
2. 자금조달계획서
3.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개발구역 위치도
4.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210mm×297mm(일반용지60g/㎡(재활용품))

( 뒤 쪽 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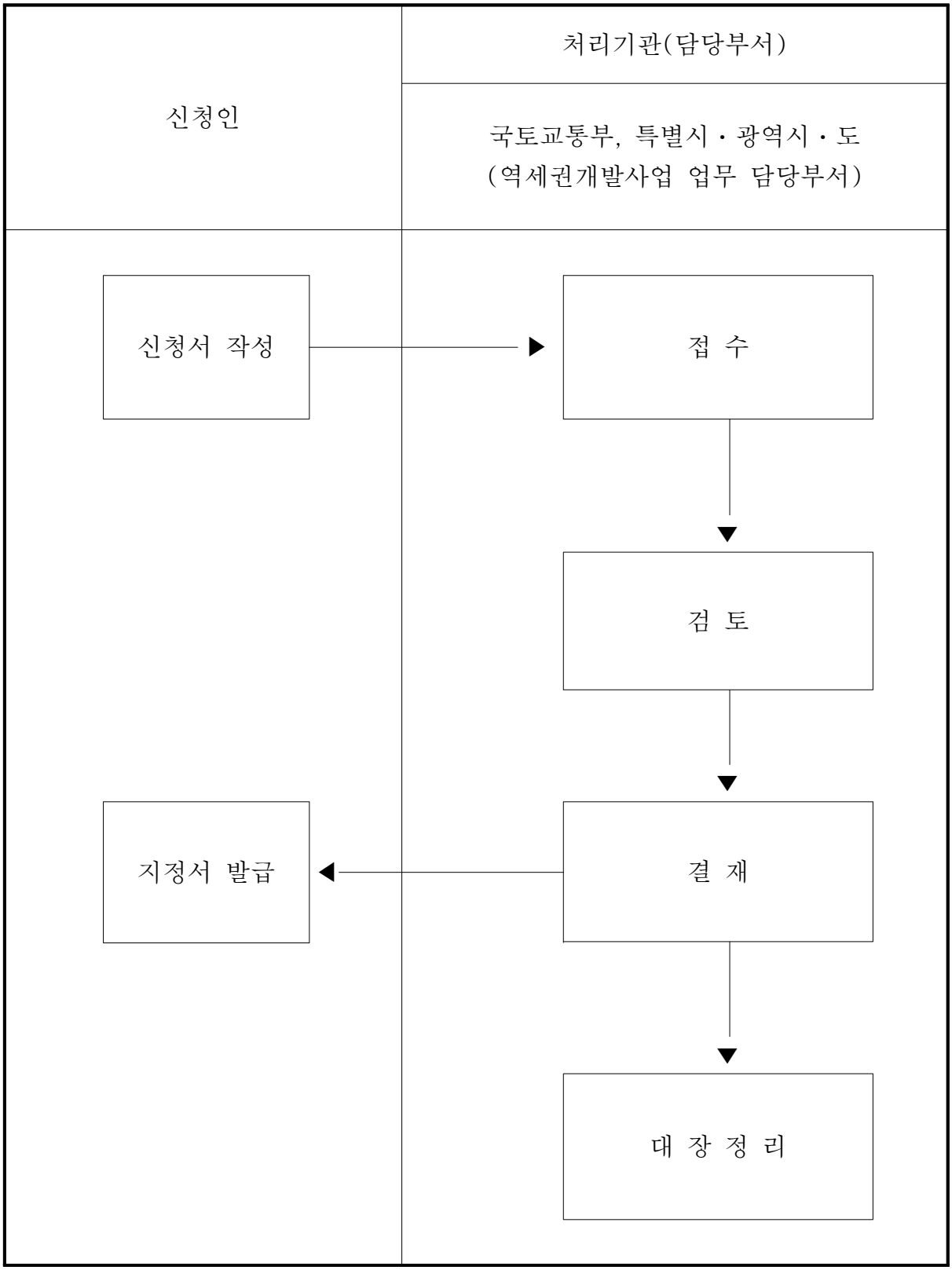
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